

環境汚染의 私法的 救濟 再照明

具 然 昌*

■—————》차 레 《—————

I. 序 說

II. 環境汚染의 私法的 救濟의

법률적 이론구성

1. 몇가지 유형
2. 우리 民法下에서의 이론구성

III. 環境汚染의 私法的 救濟의

實體法的 側面

1. 損害賠償請求
2. 留止請求

IV. 環境汚染의 私法的 救濟의

節次法的 側面

V. 관련된 몇가지 주요문제

1. 多數當事者의 문제
2. 公害와 自然災害의 共同原因과 賠償責任
3. 環境侵害와 原告適格
4. 酸性雨의 사법적 구제

VI. 環境汚染의 私法的 救濟의 한계와 대책

I. 序 說

오늘날 인구의 증가, 도시화, 산업화 및 과학기술의 발달은 필연적으로 새로운 유형의 손해를 야기시켜 주게 되었다. 산업재해, 교통사고, 의료사고, 약화사고, 公害나 제조물의 瑕疵·缺陷에 의한 被害가 그 대표적인 것이며, 이러한 새로운 類型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이 최근 그 현저한 숫적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 중에서 公害, 즉 環境汚染被害¹⁾는 일반적인 不法行爲類型과는 달리

* 경희대 법대교수

- 1) 環境汚染과 公害는 매우 유사한 개념이지만, 環境汚染은 일정 수준이상의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토양오염 등 현상 자체를 지칭할 따름이나, 公害는 이러한 현상과 이로 인한 被害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관한 상세는 具然昌, 環境法論(법문사, 1985), pp.

계속적인 침해로서 사람의 건강, 재산 및 환경에 광범위하게 유해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사람이나 물건 등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아니고, 대기나 물, 토양 등과 같은 매개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그리고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일어나는 침해이다.²⁾ 公害의 이와 같은 특질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侵害行爲類型에 비하여 가해자의 특징이 어렵고, 因果關係의 입증이 지극히 곤란하여 그 被害救濟의 실현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環境汚染物質 자체의 배출행위가 위법한 것인지 그리고 그로 인하여 피해를 야기한 경우 배상책임을 저야 하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일정한 정도 이상의 오염배출행위에 대한 위법성의 인정이 확립됨에 따라 그에 대한 법률상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³⁾ 環境汚染과 관련한 법적 책임은 대체적으로 환경관계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公法上 責任, 환경입법상의 처벌법규의 위반에 대한 刑事上 責任, 環境汚染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民事上 責任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 중 민사상 책임은 環境汚染으로 인한 피해의 배제 내지 예방을 구하거나 입은 피해의 填補를 구하는 방법으로 실현된다. 전자를 보통 留止請求라 하며, 후자를 損害賠償請求라 한다.⁴⁾ 環境汚染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총괄하여 環境汚染(公害)의 私法的 救濟라고 일컫고 있다.⁵⁾ 環境汚

41~44 참조. 그러나 公害 관념은 통상용어로서나 실무상의 용어로 사용함에 있어 편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널리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2) *Ibid.*, pp. 35~37; 木宮高彦, 公害概論(東京:有斐閣, 1974), pp. 4~12 참조.

3) *Infra* III. 1. (2) 참조.

4) 엄격히 본다면 피해의 예방·배제와 손해배상 이외에 독법상의 조정적 보상 청구권(Ausgleichsanspruch)이나 영미법상의 留止에 갈음하는 배상(damages in lieu of injunction)을 구별할 수 있으나, 넓게는 이를 손해의 전보 속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5) 公害의 私法的 救濟는 공법적 규제에 대응한 개념으로서, 민법과 민사소송법에 근거하여 법원에 의한 環境汚染被害의 구제를 의미한다. 이는 행정적 규제 및 사적 규제와 함께 環境汚染被害의 구제수단의 일종이며, 司法的 救濟와 私法的 救濟는 혼용되고 있다. 이에 관한 상세는 具然昌, “環境汚染被害救濟制度의 확립,” 환경법연구 제 2권(1980), pp. 93~97 참조.

染被害의 구제를 위하여는 근대법 및 그 이론에 의하여 그 해결을 도모하여야 하였었다. 그러나 이러한 侵害類型은 근대법이 예상하지 못했던 특질을 가지기 때문에 그 구제에 있어 적잖은 문제점과 장애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의 해결을 위한 이론의 발전이 현저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입법을 통한 해결책을 강구하기도 한 것이 지금까지의 각국의 추세였다.⁶⁾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1970 년을 전후하여 環境汚染被害를 둘러싼 분쟁이 법원의 문을 두드리게 됨에 따라 이 새로운 侵害類型에 대하여 학계나 법조계에서 적극적인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다.⁷⁾ 그리하여 이에 관한 많은 이론 및 판례연구가 누적되어 문제해결에 적잖은 기여를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1980 년 서울대법학연구소에서 개최한 “環境과 法”에 관한 세미나에서 필자가 “環境汚染의 私法的 救濟”라는 주제로 개괄적으로나마 집약하여 발표한 바 있었다.⁸⁾

여기서는 그 후 10 년이 지난 현시점에 와서 같은 주제를 간결하게 재음미해 보려는 것이 이 논고의 주된 목적이다. 따라서 종래에 다루었던 틀에 맞추어 環境汚染의 사법적 구제에 관하여 그 법률적 구성을 검토한 후, 私法的 救濟를 실체법적 측면과 절차법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 검토해 보기로 한다. 그리고 1980 년 이후 특히 중요한 문제점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多數當事者間의 환경피해구제의 문제, 公害가 自然的 災害와 공동원인이 된 경우의 피해구제, 환경침해와 原告適格 그리고 酸性雨의 사법적 구제에 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와 아울러 環境汚染의 私法的 救濟를 실현시키기 위한 이론의 발전과 입법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구제에는 스스로의 한계가 있음에 비추어 환경오염에 의한 피해구제의 확보

6) 이에 관한 상세는 具然昌, 環境法論, pp. 125~133; 具然昌, “각국 입법사계를 통해서 본 환경보전,” 사상과 정책(경향신문사) 1986 년 봄호, pp. 208~209 참조.

7) 全昌祚, 公害의 私法的 救濟의 법리에 관한 연구(동아대출판부, 1974), p. 134; 李正雨, “公害에 대한 私法的 救濟,” 저스티스 제11권 제1호(1973. 12), p. 75; 한국법학교수회편, 法과 公害, 1974 등 참조.

8) 서울대법학연구소편, 법학(서울대) 제22권 2호(1981), pp. 54~79 참조.

를 위하여는 어떠한 방법이 어떠한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II. 環境汚染의 私法的 救濟의 법률적 이론구성

1. 몇 가지 유형

각국의 입법체에 따라 環境汚染의 私法的 救濟의 법률적 구성에는 차이가 있다. 留止請求와 損害賠償請求에 관하여 不法行爲法的 또는 物權法的으로 일원적으로 구성하는 입법체가 있는가 하면, 이를 2元的으로 구성하는 입법체도 있다.

(1) 不法行爲法的 이론구성

영미법과 불란서법이 이 범주에 속한다. 영미법에서는 이른바 nuisance (生活妨害), 특히 private nuisance에 대하여 그 구제인 損害賠償이나 留止請求 모두를 不法行爲의 문제로서 취급한다.⁹⁾ 佛法에서는 근린방해 (troubles de voisinage)의 구제수단은 역시 留止請求와 損害賠償 모두를 不法行爲責任의 효과로서 취급된다. 다만 損害賠償보다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는 점에 특색이 있고,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서는 개선명령과 유지명령의 둘이 있다.¹⁰⁾

(2) 物權法的 이론구성

독일법이나 스위스법이 여기에 속한다. 즉 生活妨害(Immission)의 구제를 제 1차적으로 相隣關係法에 있어서의 유지와 상당한 보상으로서 취급하고, 보충적으로 불법행위법적 배상을 문제삼고 있다.¹¹⁾

9) R. Stewart and J. Krier, *Environmental Law and Policy*(Indianapolis: Bobbs-Merrill, 1978), pp.204~210; W. Rodgers, *Environmental Law*(St. Paul: West, 1977), pp.100~153 참조.

10) 石川良雄, “フランス判例における近隣妨害の諸問題(上),” “判例タイムズ” No. 392, pp.6~11 참조.

11) F. Baur, *Lehrbuch des Sachenrechts*, 8Aufl., SS.221~236; *Münchener Kommentar BGB*, 1981, SS.484~513; Rudolf Stich, “Immissionsschutz im bürgerlichen Recht,” Jürgen Salzwedel, *Grundzüge des Umweltr-*

(3) 2元論的 구성

이를 질충주의라고도 하는바, 留止請求는 物權法的으로, 그리고 損害賠償은 불법행위법적으로 이론구성하는 것이다. 生活妨害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일본 민법하에서의 판례·다수설이 이 입장을 취하고 있다.¹²⁾

2. 우리 民法下에서의 이론구성

우리 民法에는 獨逸民法 제906조에 상당하는 제217조가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현행법상의 해석으로는 앞에서 열거된 세 가지의 이론구성이 모두 가능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판례 및 학설은 나누어지고 있다.

(1) 判例·多數說

지금까지의 環境汚染事件은 거의 전부가 損害賠償事件이었으며,¹³⁾ 판례는 처음부터 不法行爲法에 의존해 왔다. 우리나라 최초의 公害判決인 大判 1973. 5. 22, 71 다 2016에서는 公害의 私法的 救濟手段의 하나인 損害賠償請求의 법률적 이론구성을 不法行爲法에 의존한 하급심의 태도에 대하여 대법원은 아무런 이의없이 이를 받아들였다.¹⁴⁾ 公害事件에 관하여 보다 많은 경험을 쌓은 일본의 판례태도에 영향받은 바가 큰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이후 판결들 모두가 역시 損害賠償責任을 인정함에 있어 不法行爲法的인 이론구성에 의존하고 있다.¹⁵⁾

echts, Erich Schmidt Verlag, Berlin, 1982, SS. 289~302; *Berner Kommentar* IV (Sachenrecht), SS. 173~264 참조.

12) 澤井祐, 公害の私法的研究(東京:一粒社, 1969), p. 137.

13) 우리나라의 公害判決에 관한 개괄적 고찰은 具然昌, 環境法論, pp. 569~635 참조.

14) 우리나라의 公害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판결인 大判 1973. 5. 22, 71 다 2016에서 “많은 양의 유독가스를 분출시켜 원고소유 과수원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피고에게 위와 같은 不法行爲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불법행위론을 꼭대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귀책사유판단을 함이 없다는 논지는 이유없다”고 판시하여 不法行爲法的인 이론구성에 입각한 하급심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인 이래 판례의 태도로서 확립되었다.

15) 예컨대, 大判 1973. 10. 10, 73 다 1253(손해배상, 상고기각); 大判 1973. 10.

그리고 학자들의 대부분은 環境汚染으로 인한 損害賠償請求에 관하여 不法行爲法에 의한 이론구성을 의문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⁶⁾

(2) 少數說

몇몇 학자들은 우리 民法 제217조를 근거하여 留止請求는 물론 손해배상에 관하여도 그 이론구성을 物權法的, 특히 相隣關係法的으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¹⁴⁾

(3) 종합적 고찰

相隣關係說에 대하여는 다음의 이유로 반대 내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형식상으로는 실정법상의 근거를 결하고 있으며, 둘째, 相隣關係法과 不法行爲法의 적용영역상의 차이를 무시하고 있으며, 셋째, 相隣關係法에 의하여 과거나 장래의 손해의 補償請求를 인정하는 것은 이론적 의제나 우회이며, 넷째, 公害를 오로지 物權法的의 영역에서만 파악하려는

10, 73 다 974(손해배상, 상고기각); 大判 1973.11.27, 73 다 919(손해배상 파기환송); 大判 1974.12.10, 72 다 1774(손해배상, 상고기각); 大判 1977.4.12, 76 다 2707, 2708(손해배상, 파기환송); 大判 1977.5.24, 75 다 185¹(손해배상, 상고기각); 大判 1977.8.23, 77 다 945(손해배상, 상고기각); 大判 1978.4.25, 78 다 106(손해배상, 상고기각); 大判 1978.12.26, 77 다 2228(손해배상, 파기환송); 大判 1979.1.23, 78 다 1653(손해배상, 파기환송); 大判 1980.3.25, 78 다 2229, 2230(손해배상, 상고기각); 大判 1984.6.12, 81 다 558(손해배상, 파기환송); 大判 1985.11.12, 84 다카 1968(손해배상, 파기환송) 등 참조.

- 16) 全昌祚, 公害의 私法的 救濟의 법리에 관한 연구(동아대출판부, 1974), p. 134; 李正雨, “公害에 대한 私法的 救濟,” 저스티스 제11권 제1호(1973.12), p. 75; 李光信 “公害事件과 因果關係의 立證責任”, 법조춘추 제114-115호(1974.4~5); 張庚鶴, “公害事件判例”, 법과 公害(한국법학교수회, 1974), p. 254; 金顯泰, “公害責任의 사법적 연구”, 연세행정논총(행정대학원) 제6집(1979), p. 181 등 참조.

郭潤直교수는 종래 少數說의 입장을 취하였지만(郭潤直, 物權法: 판례교재 <법문사, 1973>, p. 331), 그의 채권자론에서는 環境汚染의 사법상책임의 근거로서의 民法 제217조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특히 損害賠償에 관하여는 民法의 不法行爲法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郭潤直, 채권자론(박영사, 1984), pp. 710~713 참조.

- 17) 崔栻, “公害와 인과관계”, 법과 公害(한국법학교수회, 1974), p. 139; 鄭權燮, “환경오염과 사법상구제”, 법과 環境(한국법학교수회, 1977), pp. 149~150; 金基洙, “公害의 私法的 救濟의 방향과 相隣關係法的의 구성” 環境法研究(한국환경법학회) 창간호(1979), pp. 132~137 등 참조.

태도가 문제의 실질에 적합한 접근방법인가의 해당여부를 가림이없이 相隣關係法の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결과 방해행위는 모두 상린관계법상의 적법행위로 일단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다.¹⁸⁾

그러나 民法 제217조가 環境汚染에 의한 침해를 예상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법적 구제의 근거로서 미비·불완전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無過失責任의 인정근거가 되며, 違法性段階說의 결함을 극복할 수 있고 損害賠償請求와 留止請求의 법적 근거의 통일적 이해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등에서¹⁹⁾ 物權法的 이론구성의 실익을 찾을 수 있다.

다만, 광업법 제91조, 수산업법 제76조, 원자력손해배상법 제3조의 無過失責任立法에 이어서, 환경보전법 제60조 1항에서 環境汚染에 의한 생명·신체의 손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無過失責任立法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례 및 학설을 통하여 民法上的 과실책임원칙하에서도 거의 無過失責任에 가까운 이론구성이 발전·정착함에 따라²⁰⁾ 이제는 相隣關係法的 이론구성의 필요성 내지 실익이 현저하게 완화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Ⅲ. 環境汚染의 私法的 救濟의 實體法的 側面

公害는 간접적·계속적인 侵害類型으로서 그 피해범위가 광역적이고, 또한 인체 내지 생활환경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특질을 가진다.²¹⁾ 따라서 근대법적 侵害類型을 전제로 하여 형성·발전되어온 私法的 救濟의 법리를 公害의 구제에 그대로 적용함에는 적잖은 문제점이 뒤따른다. 특히 전통적인 不法行爲法에 있어서의 不法行爲 성립요건인 故意·過失, 違法性 그리고 因果關係 立證 등은 公害의 구제확보를 위하여는 그 수정 내지 변용이 불가피하였고, 지금까지 상당한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다.

18) 상제는 吳錫洛, 公害訴訟의 諸問題(일신사, 1979), pp.13~15 참조.

19) 金基洙, “公害의 私法的 救濟의 방향과 相隣關係法的 구성”, pp.132~137.

20) *Infra* 주 24) 내지 29) 참조.

21) *Supra* 주 2) 참조.

1. 損害賠償請求

(1) 故意・過失

私法的 救濟, 특히 損害賠償請求의 이론구성을 不法行爲法에 의존하는 한, 그 배상의 실현을 위하여는 民法上 不法行爲의 성립요건 중 故意・過失의 존재를 원고가 입증하지 않으면 아니된다.²²⁾ 그러나 公害와 같은 대량적・집단적 被害유형에 대하여는 近代법의 過失責任主義로서는 被害者 救濟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해졌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無過失責任主義의 정립이 강력히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公害에 관한 無過失責任의 特別立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나 이는 쉽사리 실현되지 않는다. 따라서 학설・판례는 過失責任을 원칙으로 하는 近代법 이래의 사법체제하에서 公害의 특질에 적합하고 현행법리와도 부합하는 無過失責任을 구현하기 위한 법기술상의 방법론을 모색해 왔다.²³⁾

(가) 無過失責任主義로의 이론전개: 違法성과 관련시킨 過失개념의 이론적 발전도 어느 정도 전개되었으나,²⁴⁾ 過失개념만으로 無過失責任에 접근하는 이론으로서 防止義務違反說과 豫見可能性說이 있다. 防止義務違反說은 결과발생의 예방을 위하여 일정한 방지시설을 하여야 할 의무에 위반한 경우에 過失이 있다고 본다.²⁵⁾ 따라서 손해를 예상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성질에 쫓아 “상당한 설비를 한 이상” 책임이 조각된다.²⁶⁾ 그러

22) 일반적으로 故意는 일정한 사실을 인식한 심리상태 그리고 過失은 부주의에 의한 불인식의 심리상태라고 하여 구별하지만, 公害責任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過失이다. 西原道雄, “公害に對する私法的 救濟の特質と機能”, 戒能通孝篇, 公害法の研究(東京:日本評論社, 1969), p. 36 참조.

23) 全昌祚, “公害와 過失, 無過失”, 法과 公害(한국법학교수회, 1974), pp. 93~101; 安二瀧, 公害에 관한 사법적 고찰”(박사학위논문:경희대, 1974), pp. 85~96; 淡路剛久, 公害賠償의理論(東京:有斐閣, 1978), pp. 41~101; 加藤一郎編, 公害法の生成と展開(東京:岩波書店, 1970), 387~414 등 참조.

24) 野村好弘, “故意・過失および違法性”, 加藤一郎編, 公害法の生成と展開, p. 407.

25) 全昌祚, “公害와 過失・無過失”, pp. 93~94.

26) 일본의 大阪アルカリ事件(大判 1916. 12. 22, 民錄 22 輯 247 頁)에서 이 설을 취하였으며, 우리 대법원도 大判 1973. 5. 22, 71 다 2016에서 한때 이 설을 취한 것 같은 태도를 보였으나 곧 태도를 바꾸었다. *Infra* 주 28) 참조.

나 이 설은 기업활동을 계속하면서 상당 내지 최선의 방지설지를 하면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라도 過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過失의 범위를 좁게 한정하여 기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기업보호적 색채가 농후한 학설이다.

이에 반하여 豫見可能性說은 손해의 발생에 관하여 豫見可能性이 있으면 不作爲 등 손해회피조치를 취함으로써 손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豫見可能性을 過失의 중심적 내용으로 한다.²⁷⁾ 우리 판례도 이에 따르고 있다.²⁸⁾ 이 설은 豫見可能性의 범위를 확대해석하면 産業公害의 경우 過失이 거의 인정되어 실질상의 無過失責任을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이는 過失責任과 無過失責任을 구별하는 입장에 서기 때문에 過失개념을 빌린 無過失責任, 이른바 “過失의 옷을 입은 無過失責任”의 실현에는 스스로의 한계가 있다.²⁹⁾

한 걸음 나아가 不法行爲의 주관적 요건인 관실개념을 객관화시켜 이를 違法性개념에 접근시키고, 더 나아가 過失과 違法性의 양개념을 受忍限度로 융합시킴으로써 不法行爲理論을 一元化하려는 이른바 受忍限度論이 주장되고 있다.³⁰⁾ 이 설은 우리 民法 제750조의 過失과 違法性을 일체적으로 판단하려는 것으로서, 위 규정의 해석론으로서 수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지만 사실상의 無過失責任論의 주장으로서의 의의는 크다고 할 것이다.

(나) 無過失責任의 立法化傾向 : 학설·판례에 의한 無過失責任에의 접근경향은 特別立法에 의하여 실현시키는 경우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鑛業法 제91조 내지 98 조에서 鑛害에 관하여, 水産業法 제76조에서는 수질오염에 의한 어업피해에 대하여, 그리고 原子力損害賠償法 제 3 조에서

27) 澤井 柚, 公害の私法的研究, p. 186; 淡路剛久, “最近の公害訴訟と私法理論(4),” 判例タイムズ 第280號, p. 6 참조.

28) 大判 1973. 10. 10, 73 다 1253; 大判 1973. 10. 10, 73 다 974 참조.

29) 谷口知平, “公害(環境汚染)責任の認否に關する判例・法理”, 龍谷法學 第4卷 第3號, p. 246.

30) 상세는 野村好弘·淡路剛久, 公害判例の研究(東京:都市開發研究會, 1971), p. 71; 野村好弘, 公害の判例(東京:有斐閣, 1971), p. 76 참조.

는 방사능피해에 대하여 각각 無過失責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1977년 제정의 環境保全法 제60조 1항에서는 環境汚染으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被害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無過失責任을 인정함으로써 公害의 不法行爲責任을 확충시킨 점은 특기할만하다.³¹⁾ 또한 동법 제2항에서는 복수의 加害者에 대하여 책임의 집중에 관한 규정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環境保全法에 의하여 비록 재산피해는 제외되고 있지만, 생명·신체에 대한 環境汚染피해에 관하여 無過失責任의 원칙이 확립된 것이다.³²⁾

(2) 違法性

不法行爲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加害行爲가 위법하여야 하며,³³⁾ 위법성의 유무는 피침해이익의 성질과 침해행위의 태양의 양면에서 판단하는 것이 보통이다.³⁴⁾ 그런데 最近에 와서 公害事件에 있어서는 이른바 受忍限度論이 등장하여 위법성판단에 관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受忍限度를 넘으면 곧 違法性이 있는 것이 되며, 受忍限度의 판단여부가 문제의 핵심이 된다. 여기서 더 나아가 違法性을 과실개념과 관련·접근시켜 일원적으로 이론구성하는 新受忍限度論까지 등장하였다.

(가) 受忍限度論: 受忍限度論이란 사회공동생활을 하는 이상, 일방이 타방에 어떤 被害를 준다 할지라도 상호간에 어느 정도까지는 이를 참고 受忍하여야 할 범위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受忍限度를 넘는 손해

31) 環境汚染으로 인한 피해의 私法的 救濟의 특별법상의 근거로서 環境保全法 제60조 1항의 불비점으로는 가해원인을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진동에 국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도 環境保全法시행규칙에서 열거하고 있는 오염물질에 한정하고 있으며, 피해의 종류도 인체손해에 국한하고 있다는 점이다(李銀榮, 債權各論<박영사, 1989>, pp. 714~715).

32) 環境保全法 제60조 1항에서 생명·신체에 대한 被害에 관하여만 無過失責任을 명문화하고, 재산피해에 대하여는 이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비판이 있었다(具然昌, 環境法論, p. 574). 그러나 1989년 가을 국회에 제안되어 1990년 임시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중인 “환경정책기본법안”(동안 제31조)에서는 재산피해에 관하여도 無過失責任을 인정하고 있다(具然昌, “環境汚染의 책임”, 건설환경신문 1989. 11. 27. 참조).

33) 違法性의 요건은 損害賠償의 경우는 물론, 留止請求의 경우에도 필요하다. 다만, 대개는 違法性段階說을 취하기 때문에 損害賠償과 留止請求의 違法性을 달리 취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加藤一郎編, 公害法の生成と展開, p. 13.

34) 예컨대, 郭潤直, 債權各論, pp. 619~627; 金曾漢, 債權各論, p. 464 참조.

를 입히면 違法性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³⁵⁾ 현재 지배적인 견해로서 우리 법원도 이 견해를 따르고 있다.³⁶⁾ 그런데 違法性의 유무, 구체적으로 말하면 受忍限度라는 것을 어떠한 사정을 고려하여 판정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요소로서는 공익성,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被害者의 특수사정, 계속성, 공법적 기준과의 관계, 손해의 회피가능성과 가해자의 손해방지조치 등이다.³⁷⁾

受忍限度論은 위에 열거한 요소에 대한 판단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受忍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損害賠償責任을 진다는 것으로 되어 사실상의 無過失責任이 된다.³⁸⁾ 그러나 제도상으로는 과실책임주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受忍限度를 넘는 침해가 있는가의 여부는 被害者가 입증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뿐만 아니라 受忍限度의 판단에 있어서는 여러 요소와 관련하여 이익형량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被害救濟에 철저히 할 수가 없다는 난점이 있다.

受忍限度論者들은 환경오염피해의 위법성은 앞서 말한 제요소에 의해 결정하나, 그 위법성의 정도는 손해배상청구와 유지청구의 두 경우에 동일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즉, 유지청구의 受忍限度가 손해배상청구의 受忍限度보다 높다는 違法性段階說을 주장하는 것이 보통이다.³⁹⁾ 왜냐하면 유지청구는 손해배상에 비하여 기업에 주는 타격이 크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나) 新受忍限度論: 그런데 過失개념의 객관화와 違法性개념의 접근 및 융합의 과정을 밟게 되자, 종래의 통설적 견해와는 달리 過失개념과 융합된 違法性개념을 넓은 의미의 違法性으로 파악하여 不法行爲의 성

35) 野村好弘, “公害と違法性”, 加藤一郎編, 公害法の生成と展開, pp. 434~460; 李正雨, “公害에 대한 私法的 救濟”, pp. 80~81; 李勇雨, “受忍限度論小考” 法曹 제27권 제10호(1978. 10), pp. 1~19 등 참조.

36) 서울고법 1973. 9. 6, 나 1620 참조.

37) 加藤一郎編, 公害法の生成と展開, pp. 406~412; 李正雨, “公害에 대한 私法的 救濟”, pp. 81~82; 鄭權燮, “公害와 違法性”, 法과 公害(한국법학교수회, 1974), pp. 121~128 등 참조.

38) 澤井柚, 公害の私法的研究, p. 171.

39) 加藤一郎編, 公害法の生成と展開, p. 13.

립어부를 일원적으로 판단하려는 것이 이른바 新受忍限度論이다. 40)

新受忍限度論은 被害者側이 입은 손해의 종류·정도와 가해행위의 태양, 손해의 회피조치 등 加害者側의 제요인을 비교형량하여 손해가 “受忍限度”를 초과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견가능성의 유무에 관계없이 加害者의 책임을 인정하려는 것이다. 41) 受忍限度란 통상의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사회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감수할 수 있는 한도를 말하며, 이러한 한도를 넘어서 침해가 있는 경우에 위법성 또는 과실이 인정된다고 한다. 42)

新受忍限度論은 過失과 違法性을 일원적으로 파악하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無過失責任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加害者의 책임을 용이하게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종래의 2원적 입장에 비하여 加害者의 사정을 상관적이고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탄력성 있는 판단이 가능하게 된다. 43) 이렇게 시대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이 新受忍限度論의 장점 내지 효용이라 할 수 있지만, 44) 우리 민법 제750조의 해석상 이를 수용함에는 난점이 없지 않다.

(3) 因果關係

(가) 因果關係 立證緩和의 필요성: 不法行爲責任의 성립요건으로서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의 발생이 요구된다. 그런데 公害責任의 인정에 있어 가장 큰 난점은 가해행위와 손해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이다. 이는 實體法的으로는 물론 節次法的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因果關係의 존재를 입증할 責任은 被害者(원고)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특히 公害事件의 경우에는 원인물질 및 원인자의 특정이나 원인물질의 도달경로의 명확화 등이 곤란한 경우가 적지 않다. 만약 公害事件에서도 一般不法行爲事件에서와 같은 정도의 因果關係의 입증을 요구한다면 그 입

40) 野村好弘, 淡路剛久, 公害判例の研究, p. 71.

41) *Ibid.*, p. 17.

42) 野村好弘, “故意·過失および違法性”, p. 393.

43) 淡路剛久, “公害における故意·過失と違法性”, *ジュリスト* No. 458, p. 346.

44) 일본의 학설과 일부의 관례가 이 입장을 따르는 경향을 보인다. 野村好弘·淡路剛久, 公害判例の研究, p. 71 참조.

증근관⁴⁵⁾ 때문에 被害者는 被害者나 加害者側의 回復압력에 굴복하기 쉽다. 따라서 公害事件에서의 被害者救濟의 확보를 위하여 그 因果關係의 입증정도를 완화 내지 경감하여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학설·판례에 의한 다양한 이론이 대두되어 종래의 立證責任理論을 수정하려는 시도가 전개되어 왔다.⁴⁶⁾ 이 중에서 일본의 학설·판례에 의하여 개발된 蓋然性理論은 우리 나라에 소개되어 폭넓게 수용되고 있다.

(나) 蓋然性理論： 蓋然性理論은 “원고는 因果關係의 존재의 개연성을 증명하면 족하고, 피고는 반증으로써 因果關係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증명하지 않는 한 責任을 면하지 못한다”고 설명되고 있다.⁴⁷⁾ 蓋然性理論에 의하면, 被害者는 확실성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개연성 정도의 입증을 하면 그 立證責任을 다한 것으로 되어 법관에게 因果關係 존재의 심증을 형성시켜 주게 된다. 따라서 加害者는 반증으로써 이 심증형성을 저지하지 못하면 被害者를 받게 되므로 결국 加害者側은 被害者側의 立證責任이 蓋然性程度로 경감되는 만큼 반증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된다.

蓋然性理論의 법리적 구성에 관하여는 몇 가지의 견해로 나누인다. 事實上의 推定說은 公害事件에서의 인과관계의 증명은 인과관계의 존재에

45) 被害者側의 立證責任을 완화해 주어야 할 중요한 이유로서 열거하고 있는 것은 (1) 公害被害者의 경제적 지위의 열세, (2) 피해원인조사에 대한 加害者의 비협조, (3) 公害의 공적 조사기관의 불비, (4) 公害조사기술의 미개발, (5) 유해물질의 방산 등이다. 서울고법 1972.9.6, 71 나 1620; 서울고법 1973.5.17, 72 나 1809 참조.

46) 미국환경소송에서의 一應의 증명(prima facie evidence)이론, 獨逸法上の 表現證明(Anscheinbeweis)이론 및 危險領域(Gefahrenbereich)이론이나 일본의 蓋然性理論 등이 바로 그것이다. 상세는 J. Sax, *Defending the Environment* (New York: Knopf, 1971), pp. 158~181; 吳容鎬, “公害訴訟의 因果關係에 대한 입증”, *民事判例研究*(Ⅶ), pp. 166~168; 康鳳洙, “立證責任分配에 있어서의 위험영역이론”, *사법행정* 1979년 2~4월호; 全昌祚, “위험영역이론과 환경소송에의 적용”, *민사법과 환경법의 諸問題: 安二濬박사 퇴직기념논문집* (1986), pp. 645~668; 德本鎮, “鑛害賠償における因果關係”, 戒能通孝編, *公害法の研究*, pp. 63~76; 吳錫洛, *公害訴訟의 諸問題*, pp. 63~77 등 참조.

47) 早川メンキ工場廢液事件(日本前橋地裁 昭 46.3.2. 民事部判決) ; 大判 1974. 12. 10, 72 나 1774 참조.

관한 상당 정도의 개연성을 입증하면 충분하고 이의 입증이 있으면 自由心證의 테두리안에서 인과관계의 존재가 사실상 추정된다는 입장이다.⁴⁸⁾ 證據의 優越說은 영미법상의 證據優越(preponderance of evidence)의 법리를 도입하여 개연성이론을 설명하려는 것이다. 형사사건과는 달리 민사사건에 있어서는 立證責任을 부담하는 당사자가 제출하는 證據가 優越한 것이라는 정도를 입증하면 족하다.⁴⁹⁾ 따라서 공해사건의 인과관계의 입증에 관하여도 이와 마찬가지로 과학적으로 다른 가능성이 있음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더라도 인과관계의 존재를 인정하여 사법적 구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⁵⁰⁾ 그리고 공해사건에 있어서는 인과관계의 개연성정도를 입증하면 원고측의 인과관계의 立證責任이 피고측으로 轉換된다는 立證責任轉換說⁵¹⁾이 주장되고 있다.

이들 중 立證責任轉換說은 명문의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加害者에게 일방적으로 가혹한 부담을 주게 되어 당사자의 공평한 손해의 부담이라는 이념이 왜곡될 우려가 있어 부당하다. 證據의 優越說은 민사소송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뿐만 아니라 被告의 반증도 같은 정도의 입증으로 족하게 된다는 난점이 있다. 따라서 객관적 기준의 정립에 문제점이 있으나 自由心證의 범위내에서 因果關係의 존재가 사실상 추정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실상의 추정설이 무난한 편이며, 통설·판례의 입장이기도 하다.⁵²⁾

蓋然性理論은 公害事件에 있어서 因果關係 입증의 곤란을 그 입증의 정도로 인하시킴으로써 被害者救濟의 범위를 확장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주로 실체법학자들의 노력의 결실로서 그 가치는 높이 평가된다. 그러나 이 이론에서 蓋然性程度의 증명으로 因果關係의 입증은 족하다고 하지만, 그것이 일반민사소송법상의 증명과는 어느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를

48) 澤井柚, 公害の私法的研究, p. 226; 德本鎮, “損害賠償”, pp. 63~76 참조.

49) Fleming, James, Jr., *Civil Procedure* (New York: Little, Brown & Co., 1965), p. 250; McBaine, “Burden of Belief,” 32 *Cal. L. Rev.* 242(1944) 등 참조.

50) 加藤一郎, “公害法の現狀と展望”, 公害法の生成と展開, p. 29 참조.

51) 野村好弘・淡路剛久, 公害判例の研究, p. 13 참조.

52) 大判 1974. 12. 10, 72 다 1774 참조.

명백히 해 줄 수 없다는 점이 큰 결함이다.⁵³⁾ 만약 그 차이가 구체적으로 명백히 되지 않으면 蓋然性理論은 입증완화를 법관의 自由心證에 호소함에 지나지 않게 된다.

(다) 新蓋然性理論： 이러한 蓋然性理論의 약점을 극복해보려는 노력이 있다. 개연성의 입증문제를 類型的으로 구분하여 고찰하기도 하고⁵⁴⁾ 疫學的 因果關係의 개념을 도입하기도 한다.⁵⁵⁾ 그러나 특기할만한 것은 被害者의 立證責任의 부담경감을 소송법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하여 間接反證責任의 개념을 도입하여 加害者의 立證責任을 강화하는 동시에 經驗則이 작용하는 경우를 명확하게 하고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려는 이론의 출현이다.⁵⁶⁾ 이를 新蓋然性理論 혹은 蓋然性理論의 발전형태라고 부르기도 한다.⁵⁷⁾

이 이론에 의하면, 因果關係의 존재라는 종합적 事實을 몇 개의 主要事實로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의 결과는 경우에 따라 다소의 차는 있겠지만 최대공약수적인 것으로서, (1) 피해발생의 메카니즘과 원인물질, (2) 원인물질의 被害者에의 도달경로, (3) 가해공장에서의 원인물질의 생성 및 배출이라는 세 가지 事實의 유형으로 분석된다. 이 세 가지 주요 事實을 직접증거에 의하여 증명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間接事實에 의하여 증명하는 것은 가능하며, 被害者側에서 이러한 事實을 전부 증명할 필요는 없고 위 事實 중 어느 두 가지(즉, (1)과 (2), (1)과 (3) 혹은 (2)와 (3))의 事實을 증명한 경우에는 加害者側에서 다른 間接事實을 증명하여 因果關係가 존부불명으로 되지 않는 한, 법원은 因果關係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⁵⁸⁾ 즉, 被害者側에서 부담하는 것은 몇 개의 間接事實을

53) 安二濬, “公害의 사법적 고찰”, pp.133~137; 具然昌, 환경법론, p.584.

54) 淡路剛久, “因果關係”, 公害法の生成と展開, pp.418~422; 李正雨, “公害에 대한 私法的 救濟”, pp.79~80; 安二濬, “公害의 사법적 고찰”, p.133.

55) 曾田長宗, “公害と疫學”, 公害法の研究, p.236; 于山積, “公害における因果關係”, ジュリスト No. 485, p.383 참조.

56) 伊藤眞, “早川メンキ工場廢液事件”, 別冊ジュリスト No. 43(1974.5) p.47.

57) *Ibid.*, p.48.

58) 淡路剛久, “最近의 公害訴訟と私法理論(1),” 判例タイムズ 第267號, p.2 이

증명하여 세 개의 主要事實 중 적어도 두 개를 법원으로 하여금 추인케 한다는 것이다. 加害者側에서 부담하는 것은 被害者가 행한 間接事實의 증명을 동요시키든가(反證) 혹은 다른 間接事實을 증명하여야(間接反證) 하는 것이다. 법원은 加害者의 反證 또는 間接反證이 성공하지 않는 한 먼저 추인된 두 개의 事實로부터 因果關係를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⁵⁹⁾

(라) 대법원의 태도: 우리 대법원은 1974년 蓋然性理論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주었었지만,⁶⁰⁾ 그 이론 승인의 실익은 거의 없었다.⁶¹⁾ 그러나 1984년 의창군 대 진해화학사건⁶²⁾에서 蓋然性理論의 승인을 재확인함과 함께, 蓋然性理論의 핵심이 되는 蓋然性程度의 입증에 관한 명백한 기준을 제시해 줌으로써 우리 나라의 독특한 蓋然性理論을 확립·정확화시키는 기틀을 마련해 주었다.⁶³⁾ 지금까지 하급심이 公害事件에서 한결같이 蓋然性理論을 전제하면서 (1) 原告의 오염물질 배출, (2) 오염물질의 원고에의 도달경로, (3) 被害메카니즘 및 피해발생가능한 오염물질량의 존재, (4) 被害의 발생사실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반하여 대법원은 위의 네 가지 사실 중 (1), (2) 및 (4)의 세 가지 事實만 입증하면 蓋然性程度의 입증을 다한 것이라고 하여 개연적 입증의 정도 및 기준을 명백히 한 점에 큰 의의가 있다.⁶⁴⁾ 이것은 앞에서의 新蓋然性理論 자체와는 다소간 상이하지만, 이를 인정한 경우와 거의 같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⁶⁵⁾

하; 好美·竹下, “イタイ・イタイ病 第1次訴訟 第1審判決の法的檢討”, 判例時報 第646號, p. 108; 吳錫洛, 公害訴訟의 諸問題, pp. 68~74 등 참조.

59) 伊藤眞, “早川メッキ工場廢液事件”, p. 48.

60) 大判 1974. 12. 10, 72 다 1774.

61) 具然昌, 環境法論, pp. 631~634 참조.

62) 大判 1984. 6. 12, 81 다 558.

63) 具然昌, “公害訴訟에 있어서의 因果關係와 蓋然性程度의 입증”, 대한변호사 협회지 1984년 10월호, pp. 56~60 참조.

64) *Ibid.*, p. 59.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설이 있다. 吳容鎬, “公害訴訟의 因果關係에 대한 입증”, pp. 175~176 참조.

65) 具然昌, 環境法論, pp. 633~634 참조.

2. 留止請求

(1) 留止請求의 근거

環境汚染에 의한 침해가 계속적인 침해라는 점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래의 被害 救濟를 위하여는 留止請求가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公害의 留止請求를 인정함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이론이긴 하지만 그 근거가 문제된다. 종래 民法上的의 留止請求의 근거를 物權說에서 구하는 것이 통설이었으나, 最近에는 人格權說, 더 나아가서는 環境權說까지 확장되는 경향이 있다.

物權的 請求權說은 公害란 被害者가 지배하는 토지·건물의 소유권·점유권과 같은 물권 내지는 물권화한 부동산임차권에 대한 침해라 하여 이러한 권리가 留止請求의 기초가 된다고 한다.⁶⁶⁾ 이 설은 가장 전통적이고 소박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으며, 법적안정성이 높다는 데에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설은 公害를 물권에 대한 침해로 파악하는 점에서 피해의 실질에 적합하지 않은 흠이 있고, 또 물권을 갖지 않은 자의 보호에 불충분하다는 결함을 가지고 있다.

人格權說은 公害를 人格權의 침해로 보는 견해이며, 人格權은 물권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절대권이므로 이 역시 留止請求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한다.⁶⁷⁾ 이 설은 오염피해의 실질을 바로 파악한 이론이기는 하지만 人格權 자체가 아직도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있는 개념이 아닐 뿐만 아니라 법체제내에서도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環境權說은 留止請求의 근거로서 環境權이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의 절대권을 인정하는 견해로서 종래의 受忍限度論이 지니는 이익형량의 불안정성을 비판하면서 나타난 이론이다.⁶⁸⁾ 이 설은 위법성의 판단기준으로부터 이익형량을 배제하는 결과 환경침해 즉 위법성이라는 등식이 성립하게

66) 東孝行, 公害訴訟의理論と實務(東京:有信堂, 1971), p. 95; 澤井柚, 公害の私法的研究, p. 152; 鄭萬朝, “소음규제”, 法曹 1978년 12월호, p. 33.

67) 加藤一郎編, “序論”, 公害法の生成と展開, p. 20.

68) 李勇雨, “公害防止訴訟”, 대법원판, 환경문제와 재판, 1978, pp. 312~317.

된다. 이 설은 公害로 인한 환경파괴의 중대성을 직시한 이론임에는 틀림 없으나 環境權 개념 자체가 아직도 형성도상의 개념으로서 현행법체제내에서 확립되지 아니하였다는 문제점이 뒤따른다.

不法行爲說은 물권이나 人格權 등 절대권의 침해가 없더라도 생활이익의 침해가 있으면 不法行爲의 효과로서 금전배상뿐만 아니라 留止請求도 할 수 있다고 한다.⁶⁹⁾ 그러나 이 설은 금전배상의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는 民法의 규정을 정면으로 무시하게 된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

어떻든 우리 民法 제217조는 民法 제214조, 제205조, 제206조를 그만두고서라도 유지청구의 실정법적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하여 留止請求의 법적 구성은 人格權의 내지는 環境權의인 구성까지도 그 시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⁷⁰⁾

(2) 留止請求의 요건 및 인용

· 公害의 留止請求를 위하여서는, 첫째, 被害의 정도가 受忍限度를 넘어야 하며, 둘째, 침해행위가 반복성·계속성이 있어야 하고, 셋째, 침해행위가 사업활동이라는 허용된 행위에 기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침해가 受忍限度를 넘어 위법하다고 하여 곧 留止請求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유지를 허용함으로써 생긴 加害者·被害者行爲의 사회적 유용성, 加害者·被害者의 주관적 태양을 종합적·상관적으로 비교고량하여 留止請求의 허용여부가 판단되는 것이다.⁷¹⁾

公害의 留止請求의 인용은 사업의 중지 내지 제한이라는 결과를 가져와 경제적·사회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설혹 留止請求의 요건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 인용은 지극히 신중을 기하는 경향이 있음은 후진국은 물론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⁷²⁾ 따라서 留止

69) 浜田稔, “不法行爲의 효과に関する一考察”, 私法 第15號, p. 101; 野村好弘, “受忍限度について”, 公害研究 第1卷 3號, p. 71.

70) 吳錫洛, “公害의 私法的 救濟”, 논설집(법무부) 제4집(1980), p. 266.

71) 李正雨, “公害에 대한 私法的 救濟”, p. 85.

72) *Boomer v. Atlantic Cement Co.*, 26 N.Y. 2d 219, 257 N.E. 2d 870(1970)도 留止請求에 갈음한(in lieu of injunction) 損害賠償判決을 한 것은 그의 미가 크다. 상세는 Calabresi and Melamed, “Property Rules, Liability

請求의 인용내용은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내지 보완이나 조업의 시간적 제한 내지 조업방법의 변경과 같은 것이 되는 것이 보통이다.

IV. 環境汚染의 私法的 救濟의 節次法的 側面

公害라는 侵害類型은 近代民法뿐만 아니라 구제실현의 절차법인 民事訴訟法도 역시 예측하지 못했었던 것이다. 환경오염피해의 광역성, 대량성, 집단성은 필연적으로 피해자 및 加害者의 다중화를 가져온다. 이와 같이 公害事件에 관련된 加害者와 被害者가 多數人인 경우에 대비한 현행소송법상의 제도는 選定當事者制度이다.⁷³⁾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자 전원이 소송당사자가 되면 변론의 복잡, 송달사무의 폭주, 다수자중의 일인의 사망, 능력상실 등 때문에 소송직행이 한없이 번잡해진다. 특히 변호사강제주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공동소송인이 많을 때 그 폐단은 현저해진다. 따라서 다수자 중에서 대표자를 뽑아 그에게 소송을 맡겨 多數當事者訴訟을 단순화하는 방안으로서 고안된 選定當事者制度는 공해로 인한 被害者가 다수인 것이 보편적인 공해소송에서도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⁷⁴⁾

그러나 選定當事者는 選定者에 의한 개별적 授權이 있어야 비로소 그 권리이익에 관한 소송을 할 수 있고, 選定當事者가 진행하여 받은 판결의 효력은 選定當事者와 選定者에게만 미친다.⁷⁵⁾ 따라서 選定當事者制度는 비교적 거액의 피해를 받은 특정다수의 公害被害者에게는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불특정다수의 少額被害者에게는 거의 활용될 가능성이 희박해진다. 설혹 일부의 被害者들이 選定當事者制度를 이용하여 판결을 얻었다 할지라도 選定者群에 들지 아니한 被害者에게는 전혀 그 효력이

Rules and Inalienability: One View of the Cathedral, 85 *Harv. L. Rev.* 1089(1972) 참조.

73) 民事訴訟法 제49조 참조.

74) 李時潤, 民事訴訟法(박영사, 1982), p. 222.

75) *Ibid.*, pp. 225~226.

미치지 않게 된다. 따라서 현행법상의 選定當事者制度는 공해피해의 구제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서는 한계가 있다.⁷⁶⁾

또한 訴의 제기를 위하여서는 원고의 구체적,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요구하기 때문에 직접적이고 경제적인 목적을 초월한 이익, 예컨대 깨끗한 공기나 물의 보전을 위하여는 訴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난점이 있다.⁷⁷⁾ 實體法的 側面에서 언급한 因果關係의 입증곤란의 문제는 역시 소송법상으로도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費用, 時間, 節次, 努力 등에 관하여 소송제도 자체가 본래 결합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법원에 의한 절차는 기본적으로 1 대 1의 절차적 구조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분쟁해결의 수단으로서 민사소송의 방법에 호소하지 않으려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라 할 수 있다.⁷⁸⁾ 아마도 環境汚染에 의한 被害救濟나 분쟁해결을 위하여 소송적 방법을 기피하는 경향은 더욱 현저할 것으로 예상된다.⁷⁹⁾

또한 訴訟費用과 관련하여 訴訟救助의 문제가 被害救濟의 실현을 위하여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⁸⁰⁾ 종래 訴訟救助는 民事訴訟法중에서도 가장 등한시되어온 분야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교통사고소송이나 公害訴訟이 많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訴訟費用을 부담할 資力이 없는 被害者를 위하여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점차 높아짐으로써 訴訟救助의 본질이나 그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새로이 民事訴訟法的 重要的 課題의 하나로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公害소송에 있어서는 被害者의 대부분이 영세한 농어민이거나 도

76) 具然昌, “공해소송과 다수당사자”, p. 193.

77) 吳錫洛, “公害訴訟의 절차적 과제”, 環境法研究 제 2 권(1980), p. 31; 李載厚, “미국의 集團訴訟과 시민소송”, 논실집(법무부: 1980), p. 277.

78) 林禧燮, “한국인의 법의식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법학(서울대) 제 15 권 제 1 호(1974), pp. 33~55; 環境廳, 환경보전(1988), pp. 163~168 참조.

79) 지금까지의 환경피해구제에 관한 대법원판결이 10 여건에 불과한 점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실제의 환경분쟁의 해결은 거의 私的 救濟의 수단에 의존하고 있다. 상세는 環境廳, 환경보전(1988), p. 166 참조.

80) 吳錫洛, 公害訴訟의 諸問題, pp. 109~122 참조.

시소시민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訴訟救助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만약 경제적 빈곤자인 이들 公害被害者에게 訴訟救助가 부당하게 거부된다고 하면 그것은 곧 그들로부터 訴權(재판을 받을 권리)을 사실상 박탈하는 결과가 되어버리고 만다고 할 것이다.⁸¹⁾

現行民事訴訟法 제118조 제1항은 “법원은 訴訟費用을 지출할 資力이 없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각심에서 소송상의 구조를 할 수 있다. 단, 勝訴의 가망이 없으면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訴訟救助가 주어지기 위하여는, (1) 訴訟費用을 지출할 資力이 없을 것, (2)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것, (3) 勝訴할 가망이 있을 것이 요구된다.⁸²⁾ 그러나 이러한 요건하의 訴訟救助는 지극히 제한적으로 부여될 수밖에 없는 것이 실정이었다.

그런데 1989년 12월의 民事訴訟法 개정에서는 訴訟救助의 요건을 완화하고 그 구조의 범위를 확대한 점이 특기할만 하다. 개정법 제118조 1항 단서에서 구조요건을 첫째로 종전의 “資力이 없는 자”를 “資力이 부족한 자”로 하였으며, 둘째로 종전의 “勝訴할 가망성이 없지 않을” 것을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쳐 소송구조의 요건을 완화하였다. 그리고 동법 제119조 제2호에서는 支給猶豫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법원에서 선임을 명한 辯護士에 한하였던 종전의 규정을 개정법에서는 아무 구별없이 당사자가 스스로 선임한 辯護士까지 그 보수가 支給猶豫되도록 고쳤다. 나아가 제119조 제2항을 신설하여 판결이 확정된 뒤에 구조받은 당사자나 그 상대방으로부터 辯護士나 집달관의 支給猶豫된 보수를 받지 못한 때에는 국고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였다.⁸³⁾

81) 金洪奎, “공해소송에 있어서 소송구조”, 環境法研究 3권(1981), pp. 127~132; 吳錫洛, “공해소송의 절차적 과제”, p. 45.

82) *Ibid.*, pp. 45~50 참조.

83) 李時潤, “民事訴訟法중 개정법률에 관한 판견”, 고시연구 1990년 5월호, p. 103 참조.

V. 관련된 몇 가지 주요문제

1. 多數當事者の 문제

오늘날 산업화사회에서는 公害의 原因者(加害者)는 물론 被害者도 不特定多數인 경우가 보통이다. 原因者가 특정되더라도 복수인 경우가 많다. 종래의 不法行爲論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에 請求節次가 복잡해지든가 事實上 불가능하게 된다. 責任의 주체가 많다는 것은 被害者가 이들을 상대함에 어려움을 주게 되고, 또한 原因者側에서도 내부의 구상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곤란한 문제가 제기된다.⁸⁴⁾

加害者가 다수인 경우라도 이를 특정가능한 경우에는 현행법상 공동불법행위의 법리에 의존하게 된다. 민법 제760조 제1항에서는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공해사건과 관련하여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관하여 적잖은 견해의 대립이 있다.⁸⁵⁾

그리고 민법 제760조 제2항에서는 “공동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정하고 있다. 또한 환경보전법 제60조 제2항에서는 “사업장 등이 2 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사업장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에 의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각사업자는 연대하여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함으로써, 인과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立證責任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인과관계에 대한 立證責任을 加害者側에 전환시키는 의미를 가진다.⁸⁶⁾

84) 加藤一郎編, 公害法の生成と展開, p. 400 이하 참조.

85) 예컨대, 주관적 관련공동성 필요설을 비롯하여, 공동불법행위의 성립범위제한설(일부연대설, 상당인과관계적 제한설), 분할책임론, 立證責任경감설, 더 나아가 공동불법행위재구성론 및 군구성론 등이 주장되고 있다. 상세는 千慶松, “공해와 공동불법행위론”, 사법논집 제9집(1978), pp. 179~180; 川井建, “共同不法行爲の成立範圍の限定”, 判例タイムズ 第215號, p. 58; 淡路剛久, 公害賠償の理論, pp. 120~122; 具然昌, “공해소송과 다수당사자”, pp.

그러나 被害者가 不特定多數인 경우, 특히 그들 각각의 被害는 소액이나 그 총화는 엄청난 경우에는 종래의 소송제도로서는 救濟의 만족을 구하기가 힘들다. 被害者가 不特定多數인 경우에는 現行民事訴訟法하에서는 少額被害者의 대량적·일거적 救濟는 거의 무력하다. 이러한 결함을 극복하고 事件의 대량적·집단적 처리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소송의 단력적 운영이나⁸⁷⁾ 이른바 集團訴訟(class action)제도의 채택이 특히 요청되고 있다.⁸⁸⁾ 그러나 1989년의 民事訴訟法の 개정에서는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채택되지 아니하였다.

2. 公害와 自然災害의 共同原因과 賠償責任

加害者가 다수인 경우는 環境保全法 제60조 2항 혹은 民法 제760조에 의하여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公害와 함께 寒害, 赤潮, 수온의 강하와 같은 自然災害가 공동원인이 되었을 경우 그 因果關係의 입증도 어렵겠지만, 설혹 양원인이 공동으로 작용한 것이 인정되었다 할지라도 그 賠償額의 결정에 여간 어려움이 크지 않다. 세계적으로도 아주 드문 이러한 경우에 관한 우리의 판결이 하나 있으며,⁸⁹⁾ 벌써 두번째로 이 事件은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다.

公害와 自然災害가 共同原因이 된 경우의 賠償責任의 범위결정에 관하여는 몇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 共同不法行爲法理의 類推適用說은 복수의 가해원인 중 하나가 自然力인 경우에 민법 제760 조의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려는 입장이다. 이 견해는 민법 제760조를 유추적용함으로써 公害被害者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으며, 특히 오늘날 公害被害者救濟의 확충과 강화를 위한 법리의 발전경향에도 알맞게 된다. 따라서 가해원인중 自然力이외에 加害者가 한 사람뿐일 경우에는 이 加害者

199~208 등 참조.

86) *Ibid.*, pp. 201~202.

87) 吳錫洛, 公害訴訟의 諸問題, pp. 144~154 참조.

88) 상세는 법무부, 多數當事者訴訟研究: 법무자료 제90집(1987. 12) 참조.

89) 大判 1985. 11. 12, 84 다카 1968.

가 진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⁹⁰⁾

民法 제393조 類推適用說은 두 원인이 共同原因이 된 경우에 민법 제393조를 유추적용하려는 입장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公害에 의한 피해를 통상손해로 보고 自然力의 가공에 의한 피해를 특별손해로 하여, 加害者가 이 특별손해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도 배상하여야 한다.

自然力除滅說은 우리 민법이 과실책임원칙에 입각하고 있으므로 특별규정이 있거나 加害者의 귀책사유에서 기인한 사유가 없는 한 自然力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결코 책임지울 수 없다는 근거하에 진손해중에서 自然力에 의한 손해는 이를 제감하여 배상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⁹¹⁾

위의 세 학설 중에서 共同不法行爲法理의 類推適用說에 대하여는 공동불법행위이론은 인간의 행위만을 전제하는 것이고, 自然力에 의한 피해는 被害者가 감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기여도에 따른 求償權의 행사가 처음부터 봉쇄된다는 비판이 따른다. 그리고 민법 제393조의 類推適用說이나 自然力除滅說에 의하더라도 공해 또는 自然力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가 불명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배상범위의 결정에 어려움이 뒤따름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양당사자의 이익교량적 側面에서 볼 때, 공해와 自然力이 共同原因이 된 경우에 있어서의 배상책임의 결정은 民法 제393조의 類推適用說 혹은 自然力除滅說에 의존함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⁹²⁾

3. 環境侵害와 原告適格

현행법상 訴의 제기를 위하여는 원고의 구체적·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요구하기 때문에 직접적이고 경제적인 목적을 초월한 이익, 예컨대 깨끗

90) 상세는 具然昌, “公害 및 自然的 災害의 共同原因과 賠償責任”, 民事判例研究(X), pp. 143~160; 具然昌, “公害와 自然的 災害의 共同原因과 賠償責任의 범위: 서울고법 1988. 12. 9, 85 나 4088,” 판례월보 1989년 2월호, pp. 38~46 참조.

91) 具然昌, “공해 및 자연적 재해의 공동원인과 배상책임”, pp. 156~160.

92) *Ibid.*, pp. 160; 具然昌, “공해와 자연적 재해의 공동원인과 배상책임의 범위”, p. 44.

한 대기나 맑은 물의 보전을 위하여서나 景觀侵害를 이유로 하여 訴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난점이 있다.⁹³⁾ 환경권이 아직도 실정법체계내에서 확립되지 못했기 때문에 환경권의 침해를 근거로 한 訴의 제기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환경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하여는 현재보다도 原告適格의 확대가 특히 요청된다.⁹⁴⁾

미국의 환경법의 발달도 環境侵害나 景觀侵害와 같은 환경문제를 법원으로 가져가기 위한 법기술의 발전에 힘입은 바가 크다.⁹⁵⁾ 전통적인 법체계하에서는 환경권 침해를 이유로 한 原告適格 내지 出訴權(standing to sue)이 인정되지 않게 된다. 그런데 판례가 이른바 “피침해이익”(aggrieved interest)을 경제적 이익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자연미의 보존, 리크리에이션(예컨대, 낚시, 피크닉)등의 모습을 취하는 이익에 대한 침해도 그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결국 出訴權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여주기 시작하였다.

가장 획기적인 것은 *Scenic Hudson Preservation Conference v. F.P.C.* 사건⁹⁶⁾이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연방전력법에서 말하는 리크리에이션이라 함은 자연자원·자연미나 사적의 보존도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또한 “연방전력위원회(Federal Power Commission)는 원고에게 原告適格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 해석은 좁은 것이다. 당사자가 개인적·경제적 이익을 가져야 할 필요는 없다. 연방전력법은 경제적 이익만이 아니고 비경제적 이익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⁹⁷⁾고 판시하여 원고인 Hudson 경관보존위원회에 原告適格을 인정하였다. 이 판결을 시발점으로 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보호단체에 原告適格을 인정하는 판례가 누적되면서 미

93) J. Krier, “Environmental Litigation and Burden of Proof,” in Baldwin and Page, Jr., ed., *Law and Environment*(New York: Walker, 1970), pp.105~107.

94) 具然昌, “공해소송과 다수당사자”, p.192.

95) W. Rodgers, *Environmental Law*(St. Paul: 1977), pp.23~30; E. Hanks, et al., *Environmental Law and Policy*(St. Paul: West, 1974), pp.205~259.

96) 354 F.2d 608(1965), cert. denied 384 U.S. 941, 86 S.Ct. 1462(1966).

97) *Ibid.*, 354 F.2d at 616.

국에서의 환경보전을 위한 소송법상의 수단이 부여될 수 있었던 것이다.⁹⁸⁾

따라서 우리 법체제하에서도 環境侵害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보전을 위하여는 환경이익을 폭넓게 인정하여 이의 침해를 이유로 한 原告適格을 확대, 인정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할 것이다. 예컨대, 관할행정관청이 자연경관을 침해하는 주택이나 시설의 설치를 허가해 준 경우에 현행법하에서는 이의 취소를 다룰 수 있는 자격이 경관을 즐기는 시민이나 환경보호단체에게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입법이나 이론의 발전을 통하여 이의 인정이 확립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4. 酸性雨의 사법적 구제

세계각국이 지금까지 그토록 환경오염의 저감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酸性雨(acid rain)라는 새로운 현상이 도처에 나타나 수중생태계, 농작물, 산림, 재산 및 건강에까지 심각한 피해를 줌으로써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심각한 환경문제를 제기시켜 주고 있다.⁹⁹⁾ 酸性雨의 문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지금까지의 측정·분석이 우리나라에서도 酸性雨가 결코 등한히 할 수 없는 문제임을 지적해 주고 있다.

酸性雨는 배출된 오염물질, 예컨대 아황산가스나 이산화질소가스등이 대기중에서 화학적 작용을 일으키면서 발생원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이동하다가 비와 함께 지상에 내림으로써 식물, 재산, 건강에 피해를 야기한다는 특이한 메카니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개발한 오염방지 제도나 대책은 酸性雨에 대하여는 직접적으로 거의 실효성을 발휘할 수 없다는 데에 큰 문제점이 있다.¹⁰⁰⁾

98) 상세는 千柄泰, “미국환경행정소송에 있어서의 Standing 법리의 전개”, 안이준박사학감기념논문집(박영사, 1986), pp. 669~725; 具然昌, 환경법론, pp. 80~84 참조.

99) J. Fisher, “The Availability of Private Remedies for Acid Rain Damage,” 9 *Ecology L.Q.* 429, 430~433(1981).

100) J. Vestigo, “Acid Rain and Tall Stack Regulation under the Clean Air Act,” 15 *Environmental Law* 711(1985).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어느 나라의 환경법제도 이러한 메카니즘을 가진 酸性雨를 규제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酸性雨의 생성 및 그 피해와 관련하여 복잡다기한 법적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예컨대, 酸性雨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누구에게 어떻게 배상이나 보상을 청구할 것인가? 酸性雨를 방지하거나 저감할 수 있는 환경법적 방법과 수단은 무엇인가? 그리고 酸性雨는 그 특질상 국제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억제 내지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노력이 불가결하며, 현재 진행중인 경우도 있지만 국제법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등의 문제가 법적 문제로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¹⁰¹⁾

酸性雨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이와 같은 법적 문제를 어떤 법이론적인 체계로써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입법적 내지는 정책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인지를 우리 나라의 법체계하에서도 연구, 탐색하여야 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자연과학적 측면에서는 酸性雨 생성의 메카니즘과 酸性雨의 강우량 및 분포에 대한 조사, 분석,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위에서 제기된 酸性雨에 관한 법적 측면에서의 연구는 불행히도 거의 찾아볼 수 없음이 한국 법학계나 실무계의 실정이다.¹⁰²⁾

酸性雨와 관련된 사법적 측면에서의 접근은 지금까지 공해의 사법적 구제에 관하여 발전된 법이론으로써도 그 해결이 쉽지 않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공해와 달리 酸性雨의 원인은 수없이 많은 排出源, 그것도 그 소재 파악조차도 하기 힘든 것이라는 점, 즉 가해자의 특

101) S. Matherson, "Undertainty and Risk: A Public Policy Approach to Acid Rain," 6 *J. Energy Law and Policy* 297 (1985); Note, "Proof of Causation in a Private Action for Acid Rain Damage," 36 *Maine L. Rev.* 117 (1984); G. Wetstone and A. Rosencranz, "Transboundary Air Pollution: The Research for an International Response," 8 *Harvard Env. L. Rev.* 89 (1984) 등 참조.

102) 한국환경법학회에서는 1990년 4월 춘계학술발표회에서 최초로 具然昌교수의 "산성비문제의 법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연구 발표가 있었으며,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더구나 酸性雨의 排出源이 다른 나라일 경우에는 바로 국제사법의 법리가 기능을 발휘할 새로운 영역인 것이다.

VI. 環境汚染의 私法的 救濟의 한계와 대책

公害의 私法的 救濟의 실현을 위한 不法行爲法的 접근방법은 새로운 모습의 침해유형에 적합시키고자 그간에 많은 발전이 있었다. 이러한 발전의 누적은 公害의 私法的 救濟의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環境汚染被害의 私法的 救濟는 환경피해 내지 환경분쟁의 특수성에서 뿐만 아니라 司法救濟制度 자체에서 오는 그 스스로의 한계를 피할 수 없다.¹⁰³⁾ 따라서 私法的 救濟는 公害에 의한 피해구제수단의 최후의 보루로 하여 그 실제법적 및 절차법적인 側面의 확충을 도모함이 필요함을 들론이다.

그러나 보다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할 구제방법은 신속, 공정하고도 비용이 적게 드는 전문적인 行政的 救濟制度를 확립하는 것이다.¹⁰⁴⁾ 1989년 정기국회에 제안되었으나 아직까지도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중에 있는 환경분쟁조정법안¹⁰⁵⁾이 立法化되면 다소간 이러한 요청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제도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비록 環境被害가 보상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보상액은 대개는 거액인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기업 등 加害者側로서도 힘겨운 재정적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책임의 사회적 분산을 위한 보험, 특히 責任保險制度가 도입될 필요성이 자동차사고, 의료과오에 이어 環境染汚被害의 영역에도 불가결하게 된 것이

103) 상세는 具然昌,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의 문제점과 대책”, 법조 1989년 10월호, pp. 27~60 참조.

104) *Ibid.*, pp. 48~51; 李勇雨, “공해피해에 대한 제도적 접근”, 環境法研究 창간호(1979), pp. 84~100; 權龍雨,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효율화”, 環境法研究 제 2권(1980), pp. 53~72 등 참조.

105) 이 법안에 관한 상세는 한국환경과학연구협의회, 환경행정의 제도적 기반분석, 평가 및 개선책 강구(1989. 2), pp. 221~228 참조.

다. 環境汚染被害保險制度는 책임의 분산을 통한 加害者의 보호뿐만 아니라 加害者의 無資力 등의 경우에 被害者의 救濟確保를 위하여도 그 의의가 크다. 106) 따라서 가까운 장래에 우리의 실정에 맞는 環境汚染被害保險制度의 확립이 環境汚染被害의 私法的 救濟의 실현을 위하여 불가결한 것 같다.

106) 상세는 李在玆, “미국의 환경오염 관련 보험제도”, 손해보험 1989년 10월호, pp. 11~15 참조.